

Jisung Horizon Newsletter

November 2010 Vol.3. No.26

01 법률칼럼

- 기후변화 위험의 대처와 정보공시제도의 발전 (김도요 변호사)

06 열려라 중국

- 중국의 섭외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규칙 체계화 - 섭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발표 - (부응 중국변호사)

09 Vietnam LIVE!

- 베트남 새로운 상사중재법 새해부터 발표.. 주의해야 할 점은 (한승혁 호주변호사)

13 주목! 이 판례

- 고소의 불가분 원칙, 공정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6 최신 법령

-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조정 등
- 가맹본부의 제출서류 추가 등

18 환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일본)] 아시아 증권거래소 '눈독'...코스닥에 관심 (지평지성 일본팀)
- [Global 트렌드(브라질)] 내수시장 '탄탄'...세금·고용비용 '부담' (정철 변호사)
- [Global 트렌드(중국)] 저개발국 '집중' ...정치 영향력도 '쑥쑥' (최정식 변호사)
- [Global 트렌드(러시아)] 러, 수출품에 관세 부과...3국 간은 면세 (류혜정 변호사)

21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23 업무동향

- 지평지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성사
- 지평지성, SK그룹을 대리하여 (주)메디슨 인수전 참여

26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펀드 상품설명서 제공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가을 체육대회 개최
-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2학기 도산처리법 강의 완료
- 명한석, 류혜정 변호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의 실무와 사례' 프로그램에서 '국제석유개발계약의 실무 및 사례' 강의
- 박성철 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규제개혁 마인드 업' 프로그램에서 '재판을 통해서 본 교육과학 행정의 적법성 확보방안' 강의

31 영입인사

- 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칼럼)

기후변화 위협의 대처와 정보공시제도의 발전

- 미국 SEC의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Releas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의 공표와 관련하여



김도요 변호사

2012년으로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고자, 새로운 국제적 체제를 구상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개최되었던 코펜하겐 회의는, 사실상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들어 기후변화관련 법안(하원이 제출한 Waxman-Markey bill은 상원에서 Kerry-Boxer bill, 가칭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미국 전력법(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으로 수정되었습니다)의 통과를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그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 및 상원의원들의 부정적 태도에 힘입어, 그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단기간 내에 도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민간의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발생한 기후변화 과학자들의 이메일 유출사건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과학적 연구에 관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세기 이후 급격한 생태계 변화 현상을 설

명할 만한 다른 이론적 틀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후변화이론을 지지하며 이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의 집적과 해석, 각 주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 역시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제도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적 변형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 생산망 및 유통망의 변화, 소비패턴 및 에너지 패턴의 변화, 기술적 적응 및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탄소집약적 산업인 발전소 및 화석연료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산업들이 직면하게 될 제소위험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원유 생산 및 정유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허리케인이 치명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미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여러 건들이 이미 미국의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은 *Comer v. Murphy Oil USA* 사건인데, 1심에서는 사법부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사유라는 이유로 원고적격(standing)이 부정되었습니다. 2심 (5th circuit)에서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일부 소송 사유에 근거한 원고적격(standing)이 있다고 심리를 지속하였는데, 일부 판사가 본 사건을 회피하여 판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동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온실가스의 특성상 그 부정적 영향이 국지적으로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심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선진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위와 같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시장 점유율의 유지 측면에서도 비영리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환경정보의 공개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가 2003년부터 시작한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10년 현재 국제적인 대기업 4700여개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보내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대비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많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정보들이 집적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GS, SK 등 대기업들과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다수의 투자자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호응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집적되자, 투자자들이 이러한 자발적 정보공개 시스템을 정부의 기업공시시스템으로 편입시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7년 투자자그룹인 Ceres는 미국의 기관투자자들, 자산운용사 및 주정부 기관들과 연합하여, 미국의 연방증권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식 지도지침(formal Guidance)을 발표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SEC는 올해 1월 27일 공시규정 Regulation S-K의 공시기준으로 "중대성(materiality)"요건을 확립하여 왔던 판례법과 규정들에 대한 행정해석의 일부로서,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Release on Climate Change Disclosure)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해석지침에서는 공시규정 Regulation S-K의 4가지 항목이 기후변화 공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tem 101은 경영활동 전반에 세부사항에 관한 공시항목으로서, 전통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자금지출, 수익, 경쟁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고, 경영진이 간과할 수 없는 장래의 우발적 영향에 대하여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측면에서는, 국제적 조약의 체결 또는 국내 입법의 전개과정 및 다양한 규제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그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Item 103은 중대한 소송 및 행정쟁송에 관한 항목인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소송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각 기업들이 이에 대한 판결례나 심결례를 분석하고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해야 함을 위 해석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tem 303 경영심의 및 분석(MD&A) 항목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자금흐름, 순매출 및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동향이나 불확정적 사유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규제환경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고, 경영진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재 · 장래의 규제동향 및 시장의 동향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i) 경영진들은 불확정적 사유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인식하여야 하며, (ii) 이 경우, 그러한 사유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이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 항목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광범위한 판단의무와 공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Item 503 위험요소 항목은 기존에 투자판단에 위험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초래될 자산에 대한 물리적 위험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침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기업 전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이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또는 산업별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분석에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을 기울이게 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집적 및 연구가 촉진될 수 있고, 기존의 업무 영역의 다각화,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인한 상쇄효과를 추구하는 등, 경영 정책에 기후변화요소를 고려하는 기업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들이 더 집적되면, 회계기준에서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식 기준의 변화 등 여타 규제에 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하여 녹색성장기본법 등 산업 일반에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민간투자촉진 및 기후변화 요소의 경영고려의 측면에서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제는 그 규제대상의 분산성 때문에, 과거의 환경규제와는 달리 top-down 방식의 규제로 효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정부, 민간기업, NGO 등이 다층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시장 및 시민사회의 주도과 자발적 행위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행위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정부 및 시민사회도 이러한 동향 및 세계적 추세를 예의주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분석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JS-Horizon

(열려라 중국)

중국의涉外民事 법률관계에 관한 규칙 체계화 -涉外民事관계 법률 적용법 발표 -



부응 중국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涉外民事관계법률 적용법>(이하 "<涉外民事관계법률적용법>")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涉外民事관계법률적용법>은 총 8장, 52조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충돌규칙 등의涉外民事법률관계에 관한 규칙을 체계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돌규칙은 민사관계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규칙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현행 충돌규칙은 주로 민법통칙 제8장(제142조~제150조)과 기타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충돌규칙은 체계적, 전면적이지 않고 충돌규칙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涉外民事관계법률적용법>의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법은 혼인 가족, 상속,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분야의涉外民事관계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涉外民事관계 법률적용에 관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 충돌규칙 우선 적용 원칙

이 법은 충돌규칙에 대하여 새로운 제정한 법률이므로 기존의 충돌규칙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법은 '특별규정 우선적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즉,涉外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법에 따라 확정하며, 기타 법률이涉外민사관계 법률 적용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조).

2. 당사자 협의 원칙

<涉外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3조에 의하면 당사자는涉外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탁대리, 신탁, 부부재산관계, 운송 중인 동산 물권의 귀속, 일반 불행행위 책임, 지적재산권 책임,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license, 부당이득 등 분야에서 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중국법률이涉外민사관계에 대하여 강제 규칙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강제 규칙을 직접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습니다.

3. 최밀접관계 원칙

<涉外민사관계법률적용법>과 기타 법률에涉外민사관계의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涉外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합니다(제2조). 따라서 최밀접관계 원칙은 보충적인 원칙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에서의 최밀접관계 원칙은 당사자 협의 원칙의 보충 원칙으로, 당사자가 준거법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 의무는,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기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제41조).

4. 약자 이익 보호의 원칙

약자 이익 보호의 원칙은 이 법의 여러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로,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본국 법률 중 약자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5조),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본국 법률 또는 주요재산 소재지 법률 중 피부양인의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9조),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본국 법률 중 피감호인의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30조), '소비자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42조), '노동자 근무지 법률을 적용한다'(제43조), '권리침해자의 거소지 법률에 적용한다'(제45,46조) 등의 규정은 모두 약자의 이익 보호에 유리합니다.

5. 거소 인정의 원칙

이 법은 거소를 주요 연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외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 활동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외 간의 빈번한 왕래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자연인의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13조), '결혼조건은 당사자의 공동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21조), '부모자녀 간의 신체적관계와 재산관계는 공동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25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31조) 등의 규정은 모두 거소를 법률적용의 근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6. 국내외 법률 평등 원칙

이 법은 국내외 법률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률의 적용이 중국사회 공중이익을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제5조)와 '외국법률을 조사할 수 없거나 외국법률 중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제10조)를 제외한 기타 경우에는 외국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발표는 섭외민사분쟁 해결과 중외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인민법원, 행정기관 및 중재기구가 이 법의 충돌규칙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을 적절하게 확정함으로써 섭외민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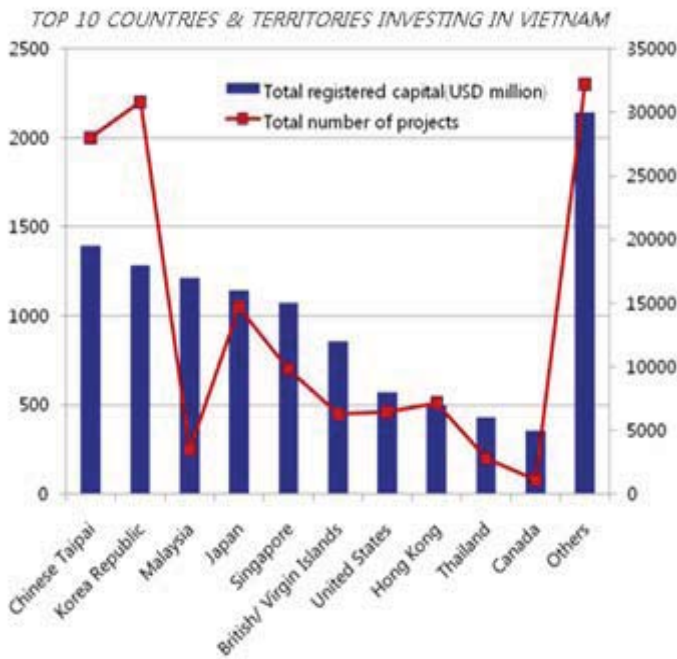
(Vietnam LIVE!)

베트남의 새로운 상사중재법 새해부터 발표.. 주의해야 할 점은



한승혁 호주변호사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2009년 기준 USD20.4 billion으로 베트남 투자 국가 중 그 투자규모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투자건수 1위, 총투자금액 2위).



국가	89개국
프로젝트 수	10,854
자본금(USD billion)	175

투자분야	프로젝트 수 대비	자본규모 대비
제조업	61.9%	50.7%
부동산	2.9%(312)	22%(38.46)

국가별 순위	프로젝트 수	자본금규모 (USD Billion)
1. 타이완	2,013	21.3
2. 한국	2,294	20.4

[출처: Business Advantage Vietnam 2010 ©Copyright Business Advantage International Pty Ltd]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투자금액과 투자건수가 많아진 만큼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상사중재법(Law 54)'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중재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과 201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사중재법(Law 54)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중재법(Ordinance, 2003)	상사중재법(Law 54)
상사행위(commercial activities)의 정의: 상사행위의 범위가 최소 '상사법'에 따른 '수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와 '일방당사자가 상사행위에 관여된 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제2조3항에 특정행위를 열거하는 식으로 정의함	상사행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중재인의 국적	
베트남에 투자한(합작 또는 100%단독투자) 외국기업은 본 법령의 목적상 베트남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없음.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3인의 중재인 중 2인은 베트남인으로 선정됨	법에 정한 중재인의 위촉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위촉될 수 있음
외국중재기관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설립 및 운영 불가	외국중재기관의 지점(branch)의 허가를 취득할 경우 본 법률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중재기관 운영이 가능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제 3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장 선정: 당사자간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원에 선임 신청토록 당사자를 강제함	법원에 선임권이 넘어가기 전 당사자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지를 합의 결정할 수 있음
----------------------	--

임시적 처분(Interim relief): 일례로, 분쟁의 대상 물건을 중재판정이 있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법원에 제소 후에만 신청 가능	일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서 결정
------------------	-----------------------

준거법: 베트남 민법 제 758 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양당사자의 합의 및 베트남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음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음
--	---------------------------

중재언어: 베트남 민법 제 758 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Foreign element 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베트남어를 중재언어로 함	Foreign element 가 있으나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언어를 중재언어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함
---	---

베트남상사중재법(Law 54)은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와 중재선진국의 법제를 최대한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여러 현실적 면에서 국제중재소재지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간의 계약에 있어서 베트남기업의 계약위반 위험이 존재하고 그 베트남기업의 해외 자산이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규모일 경우 베트남의 중재기관을 중재담당기관으로 계약에 미리 정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재판정까지의 기간이 소송기간에 비해 짧고(일반적 소송에 있어서 1심이 최소 2-3년 소요),
- 임시적 처분 결정이 가능하고,
- 중재판정에 대한 즉각적 집행이 가능.

베트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볼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베트남 중재법과 계약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주]

1. Ordinance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를 규율 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의미하며 Law/Code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 JS-Horizon

(주목! 이 판례)

고소의 불가분 원칙, 공정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법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요건이라는 성질상의 공통점 외에 그 고소·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사실관계의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2월경 PP(폴리프로필렌)와 PE(폴리에틸렌) 생산량 및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호남석화를 포함하여 SK, LG화학, 대환유화, 대림산업 등의 10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위 회사들을 고발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3개사와 자진신고한 호남석화, 삼성토탈을 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업체는 물론이고, 담합에 가담했으나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고발을 면제받은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 및 이들 업체 임원 2명까지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독점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은 두 개 업체를 검찰이 사법처리한 근거는 바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였습니다. 같이 담합을 진행한 업체들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만큼, 이를 피한 업체들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신고로 고발을 면제받은 업체들을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은 "제66조(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 및 제67조(불공정거래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석화와 삼성토탈만을 고발에서 제외된 까닭은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 때문이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쉽게 적발하고, 나아가 담합 성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정위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두 번째 자신 신고자에게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형법 제233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위 두 개사 또한 약식기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감안,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호남석화와 삼성토탈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추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기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또한 (i)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ii)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한 검찰의 첫 번째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JS-Horizon

(최신 법령)

1.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조정 등

: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시행)

1. 종래 근로감독관을 운영하는 과가 노사조정, 노동조합, 근로기준,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4개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이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개선을 통하여 취약근로자보호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최저임금이행지도 등 임금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종래 근로감독업무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인해 근로감독업무를 통한 근로자 권리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기간 근로감독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징계처분별 근로감독업무의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근로감독업무가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규정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시행\)](#)

2. 가맹본부의 제출서류 추가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46호, 2011. 1. 14. 시행)

1. 종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가 너무 간략하고, 등록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5조의2를 개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내용 및 등록심사가 내실화되고,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가맹사업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종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일부 빠져 있어, 분쟁발생 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권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2446호, 2011. 1. 14. 시행\)](#) JS-Horizon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76 | 2010. 10. 20.



지평지성 일본팀

[Global 트렌드]

일본 기업의 새로운 상장 전략

아시아 증권거래소 '눈독'...코스닥에 관심

작년 4월 24일 네프로아이티라는 일본 정보기술(IT)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됐다. 당시 코스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중국 회사 4개뿐이어서 금융 선진국인 일본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큰 화제가 됐다. 이는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경향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상장은 1970년대부터 이뤄져 1999년 이후 본격화됐는데 대부분 미국 시장에 집중됐다. 그 이유는 엔고 현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일본 기업의 최대...

[PDF](#) [e-Link](#)



정철 변호사
cjeong@js-
horizon.com

[Global 브라질]

남미의 강자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내수시장 '탄탄'...세금 · 고용비용 '부담'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세계 양대 스포츠 이벤트인 이 두 대회가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브라질은 최근 MBC '아마존의 눈물'에서 소개된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삼바 축제 정도만 떠올릴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상파울루는 세계에서 헬리콥터가 가장 많이 운항되는 도시다. 또한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브라질 기업이다...

[PDF](#) [e-Link](#)



최정식 변호사
jschoi@js-
horizon.com

[Global 트렌드]

중국의 해외투자 급증

저개발국 '집중'...정치 영향력도 '쑥쑥'

지난 9월 3일 중국 상하이시 룽즈몽 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KOTRA가 주관한 한국 투자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투자 환경, 한국 지역 개발 투자, 금융 투자 및 한국 투자 관련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저장상화·원저우은행과 유력한 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한국 투자를 주제로 중국 땅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PDF](#) [e-Link](#)



[Global 트렌드]

러시아 · 카자흐스탄 · 벨라루스 관세동맹 시행

러, 수출품에 관세 부과...3국 간은 면세

류혜정 변호사

[hjryu@js-](mailto:hjryu@js-horizon.com)

horizon.com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연방정부 관보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러시아신문)'는 현재 톤당 266.5달러인 러시아산 석유 수출관세가 11월 1일부터 9% 인상돼 톤당 289~292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랄산 석유 가격이 2009년 3월 배럴당 3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러시아 우랄산 원유에 부과되는 석유 수출 관세가 톤당 100달러까지 인하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7개월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인상된...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10. 10. 22.)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Session 1에서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의 발표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분석의 시간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정비법 교육센터의 전성제 연구원(변호사)과 법률사무소 원의 최영동 변호사가 참석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Session 2에서는 지평지성 조병규 변호사의 발표로 2010년 10월 1일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장에 시행된 공공관리제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시청 공공관리과 최성태 과장과 (주)한시티의 위준복 대표이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참고자료

1. 관련기사

- 도시개발신문 -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2010. 11. 2.)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2. 행사사진



세미나 사회를 맡은 박영주 변호사(좌)와 축사를 하고 있는 조용환 대표변호사(우) (2010. 10. 22.)



Session 1에서 발제를 맡은 정원 변호사와 토론자들(좌), Session 2에서 발제를 맡은 조병규 변호사(우) (2010. 10. 22.)

JS-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성사

동양종합금융증권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법인사무소에서 캄보디아 최초의 증권사 탄생을 알리는 오픈식과 함께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 수도공사와 텔레콤 캄보디아의 기업공개 및 상장에 관한 금융자문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파트와 캄보디아 지사는 지난 2년여 동안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이날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FAA, Financial Advisory 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Cambodia Securities Exchange) 설립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에는 총 7개의 금융회사가 종합증권사 인가를 받았고 이 중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제 1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앞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며 캄보디아의 사회간접자본, 통신 관련 우량 공기업을 상장시키는 업무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동양종합금융증권, 캄보디아 1호 증권사 등록...국영기업 상장추진 (2010. 11. 11.)
- 아시아경제 - 동양종합금융증권, 캄보디아 국영기업 상장 본격 추진 (2010. 11. 11.)
- 파이낸셜뉴스 - 캄보디아 진출 동양종합금융증권 종합증권사 라이선스 취득 (2010. 10. 22.)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In Van Chhoan
캄보디아변호사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SK그룹을 대리하여 (주)메디슨 인수전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삼성전자, SK그룹, KT&G 등 8개 업체가 참여한 (주)메디슨 인수전에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SK(주)는 사모펀드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메디슨 지분 40.94%를 인수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의향서(LOI)를 제출하였습니다.

메디슨은 국내 초음파 진단기 시장에서 3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8%로 제너럴일렉트릭(GE), 필립스, 지멘스, 도시바에 이어 세계 5위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 삼성 이어 SK도 메디슨 인수전 가세 (2010. 10. 21.)
- 한겨레 - 삼성-SK '메디슨 인수' 맞붙는다 (2010. 10. 21.)
- 연합뉴스 - SK, 메디슨 인수전 뛰어든 까닭 (2010. 10. 25.)

[담당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신민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펀드 상품설명서 제공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

지평지성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의 이번 판결은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달 방식과 형식에 대한 이번 판결이 금융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2010. 11. 3.)
- 연합뉴스 - 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2010. 11. 3.)
- 아시아투데이 - 법원 "펀드 충분한 상품설명서는 투자설명서로 봐야" (2010. 11. 3.)

[담당변호사]



우상윤 변호사



송성현 변호사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가을 체육대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3일 전체 변호사·전문가 및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체육대회로 단체줄넘기, 발야구 등의 경기뿐만 아니라 열띤 응원으로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가을 체육대회 (2010. 10. 23.)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가을 체육대회 (2010. 10. 23.)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2학기 도산처리법 강의 완료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성준 변호사)

소송파트의 홍성준 변호사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사법연수원 41기 2학기 도산처리법 강의를 완료하였습니다. JS-Horizon

명한석, 류혜정 변호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의 실무와 사례' 프로그램에서 '국제석유개발계약의 실무 및 사례' 강의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회사파트의 명한석·류혜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13일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의 실무와 사례' 프로그램에서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석유개발계약의 실무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석유개발계약의 특징 및 유의사항, 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 러시아·중앙아시아(CIS) 지역 Case Study' 등을 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박성철 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규제개혁 마인드 업' 프로그램에서 '재판을 통해서 본 교육과학행정의 적법성 확보방안'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

소송파트의 박성철 변호사는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규제개혁 마인드 업' 프로그램에서 '재판을 통해서 본 교육과학행정의 적법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교육과학 행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dwjeong@js-

horizon.com

□ 학력사항

-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법학과 졸업 (LL.B., 2008)
-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일본어/중국어학과 졸업 (B.A., 2008)
- 뉴질랜드, Institute of Professional Legal Studies (2008)

□ 경력사항

- 뉴질랜드 변호사 (2009)
- 한솔섬유(주) 인하우스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변호사 정다운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과, 일본어/중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년 11월부터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로펌이라는 지평지성의 지향대로 끊임 없이 노력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